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37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11.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12

정보공개서

(주)필아트에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필아트에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2번길 5-8, 6층(의정부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899-761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864-7991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 1899-761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주)필아트 에듀	필아트미술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2번길 5-8, 6층(의정부동)			
	법 인 설 립 등 기 일	사 업 자 등 록 일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번 호	대 표 팩 스 번 호
	2017. 06. 14.	2017. 06. 14.	이혜진	1899-7615	031-864-7991
	법 인 등 록 번 호	280211-0167920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45-81-0073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 호/이 름	영 업 표 지	주 소		
대표이사	이혜진	필아트미술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2번길 5-8, 6층(의정부동)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번 호	대 표 팩 스 번 호
			이혜진	1899-7615	031-864-799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 필아트미술』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	----------------------

명 칭	필아트미술	
상 호	필아트미술 ○○(지역명)점	
상 표	필아트	
		410229290000 / 2013.02.27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당 기 순 이 익
2021년	240,456	259,902	-19,445	347,511	-31,955	33,286
2022년	614,488	564,708	49,780	314,396	-139,307	69,226
2023년	658,011	458,236	199,775	716,107	145,726	149,994

 당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4]을 참조하세요.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혜진	대표이사	2017. 6. 14. ~ 현재	(주)필아트에듀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12.31.	1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 필아트미술클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만료일
필아트미술클럽	상표	출원일자 : 2012.02.17. 등록일자 : 2013.02.27	출원번호 : 4120120005264 등록번호 : 4102529290000	이혜진	2033.02.27.
이미지	필아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시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7. 12. 18.정(직영점 시작일 : 직영점 없음)

2. 『필아트미술』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필아트에듀	필아트미술	이혜진	2017.12.18.~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2번길 5-8, 6층(의정부동)

3. 『필아트미술』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필아트미술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미술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필아트미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7	47	0	44	44	0	136	136	0
서울	2	2	0	1	1	0	9	9	0
부산	0	0	0	0	0	0	5	5	0
대구	3	3	0	4	4	0	12	12	0
인천	3	3	0	4	4	0	10	10	0
광주	1	1	0	1	1	0	1	1	0
대전	0	0	0	0	0	0	4	4	0
울산	1	1	0	1	1	0	4	4	0
세종	0	0	0	0	0	0	2	2	0
경기	21	21	0	20	20	0	58	58	0
강원	1	1	0	1	1	0	2	2	0
충북	2	2	0	3	3	0	6	6	0
충남	5	5	0	2	2	0	5	5	0
전북	3	3	0	1	1	0	2	2	0
전남	1	1	0	0	0	0	2	2	0

경북	0	0	0	0	0	0	3	3	0
경남	4	4	0	6	6	0	11	11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3	15	0	1	0	47
2022	47	9	0	12	0	44
2023	44	98	6	0	0	136

6.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36							
서울	9							
부산	5							
대구	12							
인천	10							
광주	1							
대전	4							
울산	4							
세종	2							
경기	58							
강원	2							

충북	6							
충남	5							
전북	2							
전남	2							
경북	3							
경남	11							
제주	0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매출을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공급 물류가 없어 가맹점 매출을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7개	46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 필아트미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44,246		(비공개)	
판촉	-		0	0	-	
합계	-	-	44,246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02-729-6764

기업은행 예치시 귀하는

1. 인터넷뱅킹 이용 :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개인인터넷뱅킹 클릭 -> 제휴서비스 클릭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클릭 -> 가맹점사업자 클릭 ->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주)필아트에듀』 예치계좌에 예치대상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은행 방문 이용 : 지참서류 준비 (신분증,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내의 예치금신청서)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필아트에듀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과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예치대상(보험가입으로 대체)	확정금액
기타 비용	자율선택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홈스쿨 형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가주 불가)				
가입비	650,000	3,290,000	6,150,000	9,670,000	* 온/오프라인 교육 * 본사 실습교육 * 교육원 실습교육 * 운영 관련매뉴얼 * 운영 문서 서식 * 디자인 파일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온라인 교육 시작시 반환 안됨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신입교육비 (1인)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온라인 프로그램비	2,650,000	2,650,000	2,650,000	2,650,000				
합계	5,280,000	7,920,000	10,780,000	14,300,000				

- 교습소 형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 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단지내 상가 불가)				
가입비	2,070,000	6,470,000	7,570,000	9,770,000	* 온/오프라인 교육 * 본사 실습교육 * 교육원 실습교육 * 운영 관련매뉴얼 * 운영 문서 서식 * 디자인 파일	가맹계 약과 동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후 반환 온라인 교육 시작시 반환 안됨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신입교육비 (1인)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온라인 프로그램비	3,650,000	3,650,000	3,650,000	3,650,000				
합계	7,700,000	12,100,000	13,200,000	15,400,000				

- 학원 형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 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A타입 (차량불가)	B타입 (차량불가)	C타입 (차량불가)	D타입 (차량가능)				
가입비	6,570,000	9,320,000	12,620,000	15,920,000	* 온/오프라인 교육 * 본사 실습교육 * 교육원 실습교육 * 운영 관련매뉴얼 * 운영 문서 서식 * 디자인 파일	가맹계약 과 동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후 반환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신입교육비 (1인)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온라인 프로그램비	4,650,000	4,650,000	4,650,000	4,650,000				
합계	13,200,000	15,950,000	19,250,000	22,550,000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 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E타입 (차량가능)	F타입 (차량가능)	G타입 (차량가능)				
가입비	19,770,000	23,620,000	25,820,000	* 온/오프라인 교육 * 본사 실습교육 * 교육원 실습교육 * 운영 관련매뉴얼 * 운영 문서 서식 * 디자인 파일	가맹계약 과 동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후 반환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신입교육비 (1인)	1,980,000	1,980,000	1,980,000				
온라인 프로그램비	4,650,000	4,650,000	4,650,000				
합계	26,400,000	30,250,000	32,450,000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홈스쿨 형태	[1,000]	가맹계약체결과 동시	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교습소 형태	[1,500]			
	학원형태	[2,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가맹점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교육비	5,280~32,450	부가세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비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2,000	부가세 없음
합계	6,280~34,450	온라인 프로그램비 포함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나누면 가맹점 유형별로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	-	-	-	-	-	-
총계	-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학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각 지역 교육청 기준에 준함	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강 사	각 지역 교육청 기준에 준함	성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필아트미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회비	홈스쿨A, B, C, D 매월 159,000원 교습소A, B, C, D 매월 209,000원 학원A, B, C, D, E, F, G 매월 259,000원	로열티, 교육 교수안 제공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	선불로 매달 5일	반환 안됨	본사의 노하우 제공	계약기간 중 월회비 는 인상될 수 있음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필리러닝- 디렉터과정 매월 150,000원	온라인콘텐츠 사이트 內	선불로 매달 5일	반환 안됨	본사의 노하우 제공	
특별교육비	해당교육 교재비 및 실비청구	교재비, 강의장, 임대료, 간식비 등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 제공	
판촉비	제35조에서 정해진 금액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갑"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지연 이자	연 20%	가맹본부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본사에 지급할 비용을 연체했을 경우 부담
점포 환경 개선비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선택	-	-	-	PART VII 참조

필아티스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필아티스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 사업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본 가맹본부는 해당년도에 가맹점에 공급되는 필수품목의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하는 달의 재무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하기 갱신비는 최초 갱신 시의 비용이며, 이후에는 15/100을 가산한 금액이 갱신비가 됩니다.

1. 홈스쿨 형태	
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금 일백십만원(₩ 1,100,000 / 부가세 포함)
2. 교습소 형태	
가.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금 일백육십오만원(₩ 1,650,000 / 부가세 포함)
3. 학 원 형태	
가. A타입, B타입, C타입	금 이백이십만원(₩ 2,200,000 / 부가세 포함)
나. D타입, E타입, F타입, G타입	금 삼백삼십만원(₩ 3,300,000 / 부가세 포함)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 필아티스』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15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동일한 상표 출원, 타인이 동일한 권리를 등록받은 경우라면 그 타인과 통상사용권 설정 허락을 받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 또는 동일 권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의 출원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 필아티미슈』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 필아티미슈』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 필아티미슈』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서상의 신규 가맹점 사업자가 지불해야하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범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면적 3.3M²당 ₩ 3,000((매장면적/3.3)X지체일수X₩ 3,000)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주)필아트에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 종료 후,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금이나 교재비 등 환불은 일체 없으며, 교재와 사용 후 남은 물품은 환불은 안 되며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폐기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반품에 대해 귀하와 당사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 필아토미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 분	품 목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필수 품목	필수 품목 없음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	-	-	-

※ 해당사항 없음(직전 사업연도 필수 품목 공급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유아 및 초등학생 미술교육	각 가맹점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제공프로그램 및 교재만 사용	1회 위반 : 구두 경고	-
미술교구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필아티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당사가 개발한 신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F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F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교구를 원생 교육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F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천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유아 및 초등학생 미술교육	본사 별도통지	제한 없음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미술교구재	본사 별도통지		

필아티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F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F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 및 초등생 미술학원	필아트미술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홈스쿨 형태 <table><tr><td>가. A타입</td><td>4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나. B타입</td><td>7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다. C타입</td><td>1,5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라. D타입</td><td>2,500세대 당 1개 가맹점, (거주 불가)</td></tr></table> 2. 교습소 형태 <table><tr><td>가. A타입</td><td>8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나. B타입</td><td>1,2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다. C타입</td><td>2,000세대 당 1개 가맹점</td></tr><tr><td>라. D타입</td><td>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단지내 상가 불가/지역 메인 타운)</td></tr></table> 3. 학 원 형태 <table><tr><td>가. A타입</td><td>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td></tr><tr><td>나. B타입</td><td>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td></tr><tr><td>다. C타입</td><td>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td></tr><tr><td>라. D타입</td><td>7,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td></tr><tr><td>마. E타입</td><td>9,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td></tr></table>		가. A타입	400세대 당 1개 가맹점	나. B타입	7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다. C타입	1,500세대 당 1개 가맹점	라. D타입	2,500세대 당 1개 가맹점, (거주 불가)	가. A타입	800세대 당 1개 가맹점	나. B타입	1,2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다. C타입	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라. D타입	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단지내 상가 불가/지역 메인 타운)	가. A타입	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나. B타입	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다. C타입	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라. D타입	7,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마. E타입	9,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영업지역 별도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 A타입	400세대 당 1개 가맹점																											
나. B타입	7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다. C타입	1,500세대 당 1개 가맹점																											
라. D타입	2,500세대 당 1개 가맹점, (거주 불가)																											
가. A타입	800세대 당 1개 가맹점																											
나. B타입	1,2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다. C타입	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라. D타입	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단지내 상가 불가/지역 메인 타운)																											
가. A타입	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나. B타입	3,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다. C타입	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불가)																											
라. D타입	7,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마. E타입	9,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바. F타입	12,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사. G타입	15,000세대 당 1개 가맹점, (차량운행 가능)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원생 모집을 하기 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
대리점	-	-	-
일반소매점	-	-	-
기타	-	-	-

※ 해당 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가맹점 매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없으며 가맹점의 오프라인 매출액만 있으므로 100%로 기재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가맹본부의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F-PARTMISUN』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2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2호
○ 가맹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3호 가목
○ 본사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 교수법 또는 기타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3호 다목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 우(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9조 제2항 제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갱신료를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점포환경개선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3회 연속 지연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계약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감독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점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해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본문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을 방해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2호
○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3호
○ 커리큘럼에 맞는 교재 및 제반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4호
○ 납부할 각종 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5호
○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수강료를 변경하거나 반 구성 형태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7조 제1항 제6호
○ 가맹본부에게 주문한 교재량과 실제 원생수가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7조 제1항 제7호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양도 등을 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8호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9호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제2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7조 제2항 제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제37조 제2항 제3호

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 제2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2항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2항 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 제2항 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 제2항 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제2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사업팀 (1899-7615)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유아 및 초등생 미술학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문의 : 가맹사업팀 (1899-7615)

 귀하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없이 『』과 동종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 종료 이후 24개월간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및 기타 친인척(6촌이내 혈족, 시부모, 장인, 사위, 며느리 등)또는 법인의 명의로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영업거점지역에서 동종업종(유·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술을 교습하는 행위)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위반하는 경우, 『(주)필아트에듀』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가맹학원의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학원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협의로 결정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학원청결	담당자 학원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필요시	문의 : 가맹사업팀 (1899-7615)
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학원 방문→가맹학원 점검→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친절도 검사	담당자 학원 방문→가맹학원 점검→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 필아티미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고	광고비 100%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작한 콘텐츠, 프로그램, 광고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가맹점을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가맹본부 에게 해당 콘텐츠 등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100%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행사	상품판촉	기획비용	판촉물부수별로 제작비용 부담	판촉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통보→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판촉활동 금지
	팜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가맹점사업자 부담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등	판촉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부담액 통보→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필아티스 당사는 광고/ 판촉 종료 후, 광고/ 판촉 비용 중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잔여 금액을 균분하여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F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F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5일 이내 -최초가맹금(가입비+신입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의 5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경과, 가맹학원 개점일 이전 -최초가맹금(가입비+신입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의 80%
3. 가맹점 개점 이후 중도해지 - 계약잔여기간 x 월50만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 9항(토탈솔루션 어플에 회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어겼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 요 비 용
합 계	.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 (가맹 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5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강 사 구 인	- 본사부담 구인광고	D-4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 상보험계약을 체결	D-4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교 육 실 시	- 출퇴근 집체교육	D-43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8	
지 역 홍 보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D-15 ~ 개원전날	
개 원	-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가맹사업팀/ 1899-7615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 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 필아트미션 』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 필아트미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원 전 교육	1. 수업 이론 및 실습교육 2. 가맹학원 현장 상담 교육 및 피고용인 관리 교육 3. 가맹학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	출·퇴근 집체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규 교재 내용소개 및 수업 점검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 필아트미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간	1,980(1인당)	최초 계약 시 이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합산
특별 교육	협의	교재비 및 실비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이 종료하는 경우, 교육수료자들이 가맹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추가 교육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899-761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일 : 20 년 월 일

- 46 -

별첨3 [별지 서식]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수령하였음"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수령하였음"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첨 4. 재무상황]

2023년, 2022년, 2021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